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6.

발의자 : 송재봉 · 김문수 · 황명선

박정 · 이주희 · 박정현

남인순 · 김우영 · 김기표

윤종군 · 박지혜 · 이용선

최혁진 · 김남희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또는 출자 등에 대하여 그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%를 세액공제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차전지 산업은 필수광물인 니켈, 리튬 등 확보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함.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상환경 변화, 희토류 수출통제, 우크라이나 전쟁,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 신설 · 취득을 위한

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우리나라 이차전
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(안 제104조의15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15제1항 본문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·제련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하 이 조에서 “정제련시설”이라 한다)을 신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투자
3. 투자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제련시설을 신설 또는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 략)

〈신 설〉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세액은 「소득세법」 제76조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
정제 · 제련을 위한 시설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이
하 이 조에서 “정제련시설”이
라 한다)을 신설 또는 취득하
기 위한 투자

다.

1. · 2. (생략)

<신설>

③ · ④ (생략)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투자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

지 정체련시설을 신설 또는

취득하지 못하는 경우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